

1. 개정이유

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근거, 지정가치를 정의하는 속성(가치정의속성)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여, 일반 국민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문화유산을 국외 전시 외에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077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완화된 문화유산 반출 기준 적용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외 전시를 위한 문화유산 반출 신청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조사보고서,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가치 정의속성 포함(안 제8조, 안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검토를 위한 지정 조사보고서에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지정가치를 정의하는 속성(가치정의속성)을 명시할 수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근거기준으로 가치정의속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서식 정비 및 국외 반출 허가신청 기간 단축(안 제20조제1항제3호, 제20조제3항제3호, 제20조제5항제1,3호, 제4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3항제3호, 제43조제5항본문, 제5호, 제43조제8항제1,3호,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 문화유산을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077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완화된 문화유산 반출 기준 적용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국외 전시를 위한 문화유산 반출 신청 기한을 2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단축하고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전시, 조사·연구계획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타법 개정에 따른 적용 조문 정비(안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서식)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맞춰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별지 제23호 내지 제24호서식의 ‘행정사항’ 제7호의 전기안전점검 시행 근거적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별지 제24호의2 서식을 허가사항 구체화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완료신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의 지정가치를 정의하는 속성(가치정의속성)을 명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근거기준”을 “근거기준(제8조에 따른 가치정의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시, 조사·연구계획서(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제2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시, 조사·연구계획서(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제20조제5항제1호 중 “전시 필요성”을 “전시, 조사·연구 필요성”으로, “전시 효과”를 “전시, 조사·연구 효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시, 조사·연구기간, 전시, 조사·연구장소 및 전시, 조사·연구환경의 적정성 여부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시, 조사·연구계획서(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제4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시, 조사·연구계획서(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를 “5. 전시, 조사·연구계획서(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전시 필요성”을 “전시, 조사·연구 필요성”으로, “전시 효과”를 “전시, 조사·연구 효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전시, 조사·연구기간, 전시, 조사·연구장소 및 전시, 조사·연구환경의 적정성 여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19호의2,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43조 및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문화유산			
조사자		성 명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유산 종류					
	문화유산 명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연혁·유래 및 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가치정의속성	※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 문화유산 종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은 다른 종류(시·도지정문화유산 등)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지정 종류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 문화유산 명칭: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하여 제시하되, 시·도지사 등이 제출하는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여 검토합니다.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문화유산의 인문적·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여 적습니다.
- 연혁·유래 및 특징: 문화유산의 주요 연혁·유래·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적습니다.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가치정의속성**
 - 지정 가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와 문화유산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다른 유사 문화유산과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하여 적습니다..
 - 근거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 항목을 밝혀 적고, 근거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 항목을 밝혀 적습니다.
 - 가치정의속성은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가치를 구현하는 해당 유산의 속성을 ①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기법·관리체계 ▲위치(배치)와 주변환경(유무형 환경 및 자연환경 포함) ▲조망(경관), 무형의 속성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었는지 ②연속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개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③보충적으로,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의 포함 정도,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완전하게 나타낼 만큼 적절한 규모인지 여부를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 다른 문화유산과의 비교는 상기 가치정의속성을 토대로 해당 문화유산과 유사한 타 문화유산과의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별성을 도출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뛰어난 이유를 작성합니다.
-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문화유산구역)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문화유산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소유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적습니다.
-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유산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

※ 공통사항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세부 내용 별첨 참조” 라 적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문화유산 구분	지정종류		
	유형/종목		
대상 문화유산 현황	명칭	한글 영문	한자
	시대 / 연대		
	소재지		
	구조/형식/형태		
	재료 / 품질		
	수량/규모/크기 ※ 상세내용은 3쪽~5 쪽 중 해당 쪽에 적습 니다.	해당 문화유산 보호구역 보호물	
	현재용도/기능		
	소유자(단체)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연혁/유래/특징		
	관리단체(안)	단체명	대표자
선정사유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가치정의속성	※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유산 도면자료 5.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문화유산 사진자료 7.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2.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국보·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에 한정한다)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등

작성 요령 및 첨부 유의사항

1. 지정 종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2. 유형/종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예) 건축문화유산/궁궐, 미술문화유산/산수화)
3. 명칭
 - 가. 문화유산의 성격·유형·시대 등 그 대표성·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 나.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유산이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 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4. 시대/연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 다만, 건립·제작·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5. 소재지
 - 가.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 나.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 을 붙입니다.
6.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형태 등을 적습니다.
7. 재료/재질: 문화유산을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8. 수량/규모/크기: 해당 문화유산(지정구역),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9. 현재의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10. 소유자: 해당 문화유산(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11. 연혁/유래/특징
 - 가. 문화유산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 나.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2. 관리단체(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1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가치정의속성**
 - 가. 지정 가치는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민속적·기술적 가치 등)를 간결하게 적고, 반드시 근거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상의 근거 항목을 적습니다.
 - 나. **가치정의속성**은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가치를 구현하는 해당 문화유산의 속성을 ①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기법·관리체계 ▲위치(배치)와 주변환경(유·무형 환경 및 자연환경 포함) ▲조망(경관), 무형의 속성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었는지 ②연속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개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③보충적으로,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의 포함 정도,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완전하게 나타낼 만큼 적절한 규모인지 여부를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 다. 다른 문화유산과의 비교는 상기 가치정의속성을 토대로 해당 문화유산과 유사한 타 문화유산과의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별성을 도출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뛰어난 이유를 작성합니다.
 - 라.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4. 첨부 유의사항
 - 가. 첨부서류 제4호의 도면자료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말합니다.
 - 나. 첨부서류 제5호의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고증자료는 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을 말합니다.
 - 다. 첨부서류 제6호의 문화유산 사진자료는 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및 2,000×1,500 픽셀 이상의 디지털 파일을 말합니다. 다만 전적·서적의 경우 표지 및 본문 전체, 회화·조각·공예 등의 경우 전체 및 세부상세[전·후, 좌·우, 상·하, 화기(畫記, 그림이나 불화 등에 제작 경위와 참여자 등을 적은 기록), 제발(題跋, 서화나 책 등의 첫머리와 끝머리에 적은 글을 아울러 이르는 말), 명문(銘文, 석·비석·그릇 따위에 새겨 놓은 글), 문양, 부속물, 보호시설, 복장유물 등] 사진을 컷별로 용량이 5MB 이상이며 해상도가 300dpi 이상인 JPG파일로 제출합니다.
 - 라. 첨부서류 제7호의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은 각각 위치도, 지적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수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셰이프(SHP)파일을 말합니다.

마. 첨부서류 제11호의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건조물이 아닌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증여품인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구입품인 경우 매매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문화유산의 인문환경 및 현상·관리 상황

구 분	내 용	비 고
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 요한 사항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부속시설물(주변) 현황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등록 문화유산 분 포 현황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가치정의속성

구 분	내 용	비 고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문화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중요한 시대 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민속적·기술적 가치 등)를 간결하게 적고, 근거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상의 근거 항목을 기술	
가치정의속성	상기 지정가치를 구현하는 - 해당 문화유산의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기법·관리체계 ▲위치(배치)와 주변환경(유·무형 환경 및 자연환경 포함) ▲조망(경관), 무형의 속성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 - 연속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개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의 관계를 기술 - 보충적으로,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의 포함 정도,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완전하게 나타낼 만큼 적절한 규모인지 여부 기술(선택 사항)	
유사한 문화유산과의 차별적 특징	상기 가치정의속성을 토대로 해당 문화유산과 유사한 타 문화유산과의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별성을 도출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뛰어난 이유를 작성	

문화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유산이 건조물인 경우
(면적: m²)

연 번	명칭	시대/ 연대	구조/형 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연면적,건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								
				()								
계				()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 문화유산)
(면적: m²)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m²)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연번	명칭	구조/ 형식/ 형태	크기/ 수량	토지면적	보호물면적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방재시설 · 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방재시설 설치현황		
방재시설 설치계획		
방재인력 배치현황		
방재인력 배치계획		
그 밖의 사항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대 상 문 화 유 산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 보호물								
행 위 유 형	[] 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 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문화유산의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행위
신 청 사 항	위 치							
	내 용							
	사 유							
참고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소요경비		원 재 원		
	완료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대지 종합단면도 나.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합단면도 3. 현장 사진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 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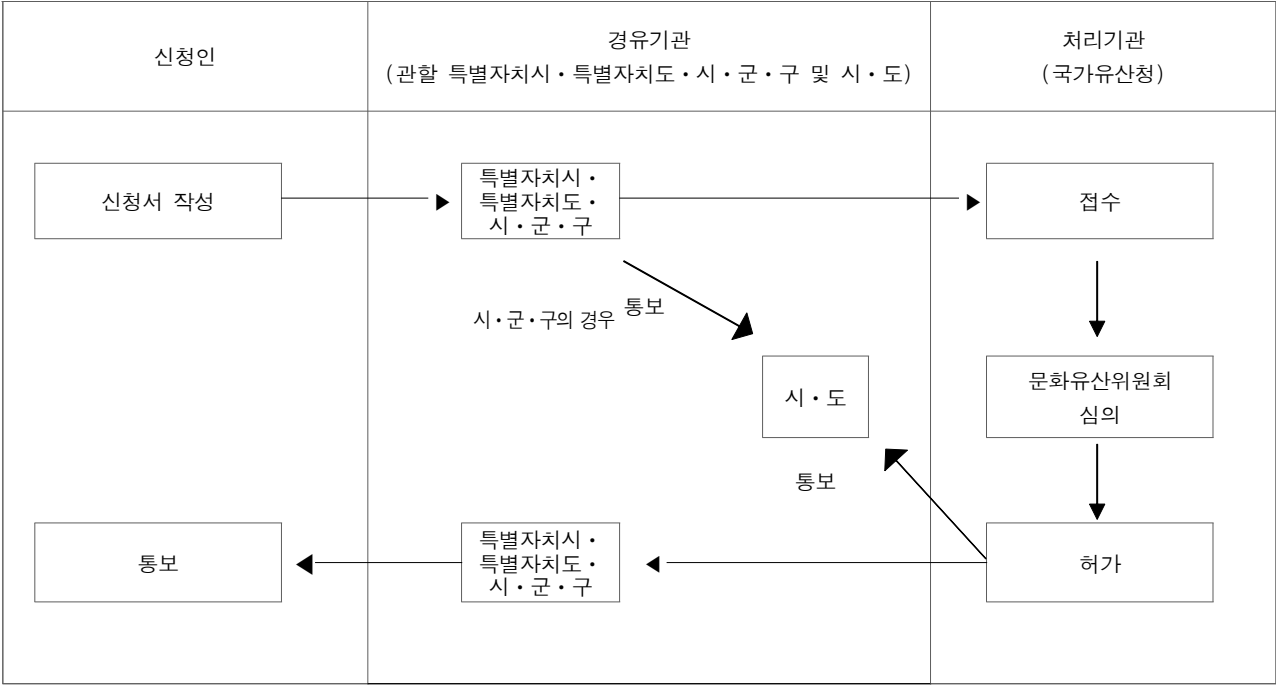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유의사항

첨부서류 제1호의 행위 계획서가 건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요(용도·위치·대지면적 등),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유산	종 류	명 칭
	소재지 (보관 장소)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 인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유산	종 류	명 칭
	소재지(보관 장소)	
허가내용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 용	
	변경허가 내용	
허가기간	당초기간	
	변경기간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 인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

구분	허가 번호	허가 일자	허가받는 자		대상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 기간	착수 일자	완료 일자	
			성명	주소	종류	명 칭	사업명	위 치	신청구분					내용
									지정문화유산 또는 보호구역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작성방법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	-----

신청인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규격	보관 장소		
반출목적			
반출대상국가	보험 방법		
반출예정연월일	반입예정연월일		
반출 담당자	성명		
	주소		
반출 중 보호방법			
반출에 관한 협약 내용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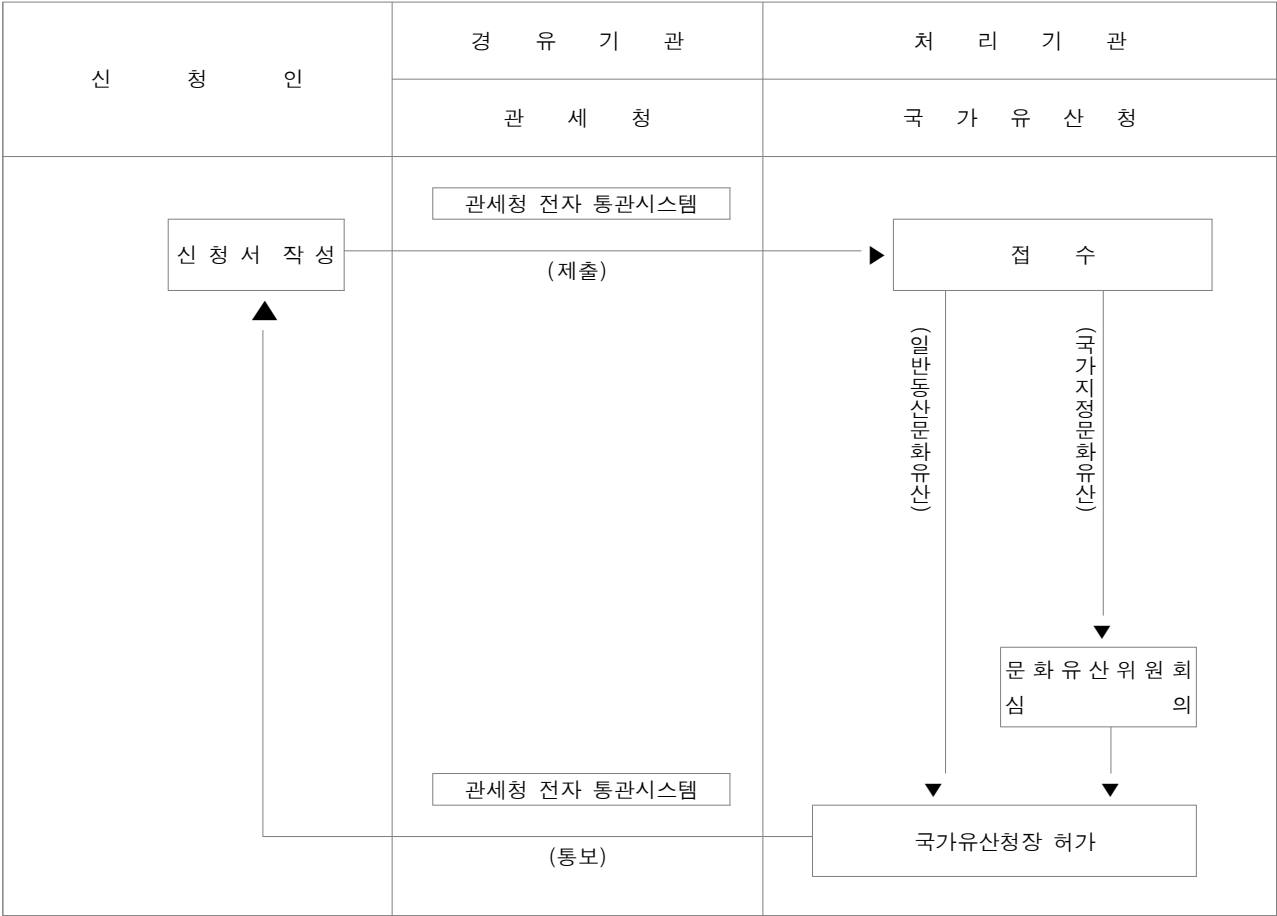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수수료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전시·조사·연구계획서(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없음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기간	
	내용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행정사항

-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의 [허가번호 및 연월일]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및 제60조제9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제43조제7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허가번호 및 연월일					
당초의 반출·입 예정 연월일					
연장허가 신청 반출·입 연월일					
연 장 사 유					
기간 연장에 관한 협 약 내 용					
그 밖 의 사 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반출 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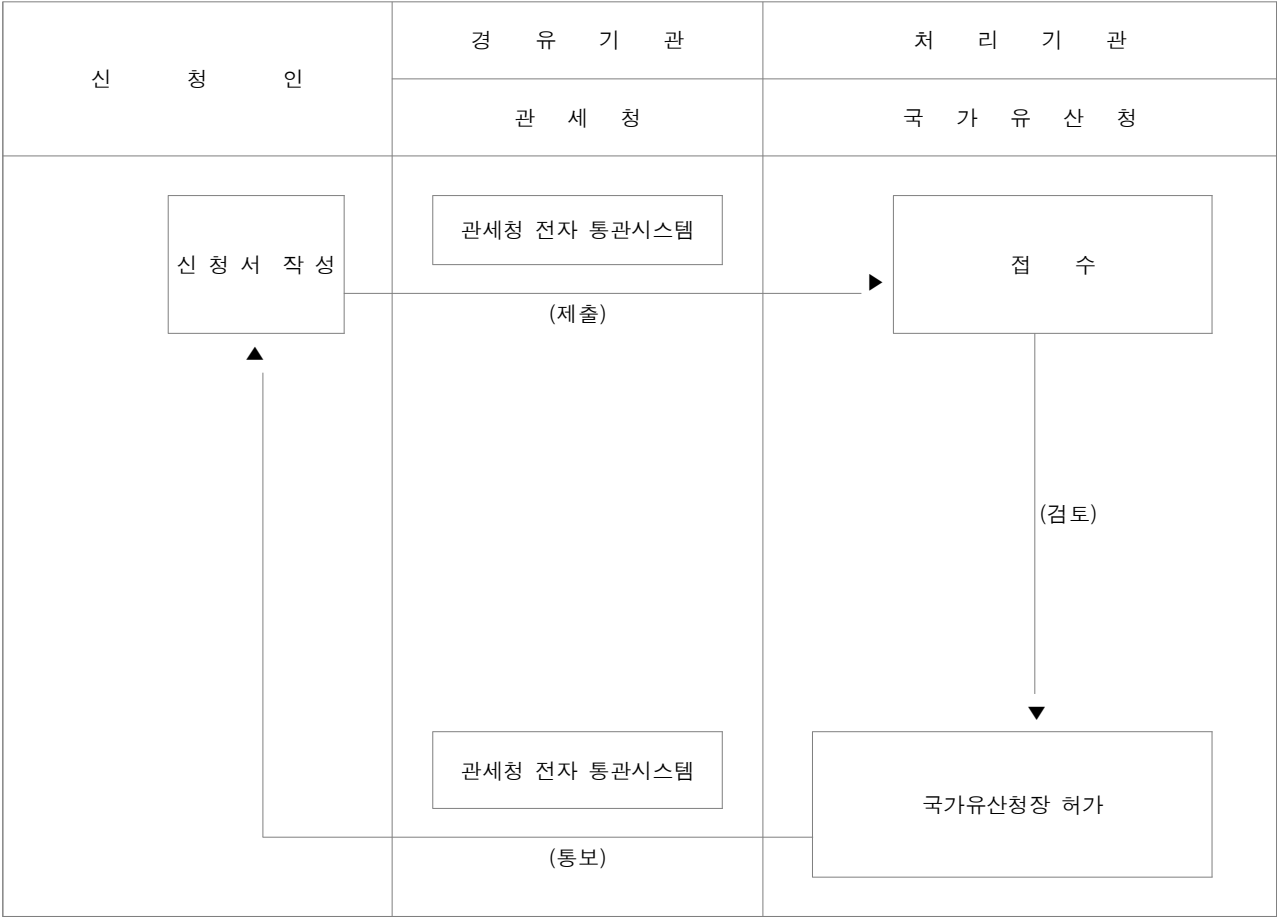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전시·조사·연구계획서(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당초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당초 반출기간	변경 반출기간	
	내용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4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및 제60조제9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제43조제7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시·도 1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 상 문 화 유 산	명칭		종류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보호물					
공 사 내 용	명칭				
	내용				
착 공 연 월 일	. . .			준공(예정) 연월일 . . .	
허가, 명령 연월일				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	업 체 명		공 사 금 액		
	감독자명		원		
그 밖의 사 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제40조제3항·제55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제3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 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착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시공 전·후 사진	수 수 료 없 음
------	-----------------------------------	--------------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단체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문화유산명칭			
종류	수량	취득경위	
규격	반출 전 소유자	반출방법 [] 구입 [] 기증	
목적			
반출국가			
보험방법			
반출예정연월일			
반출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반출중 보호방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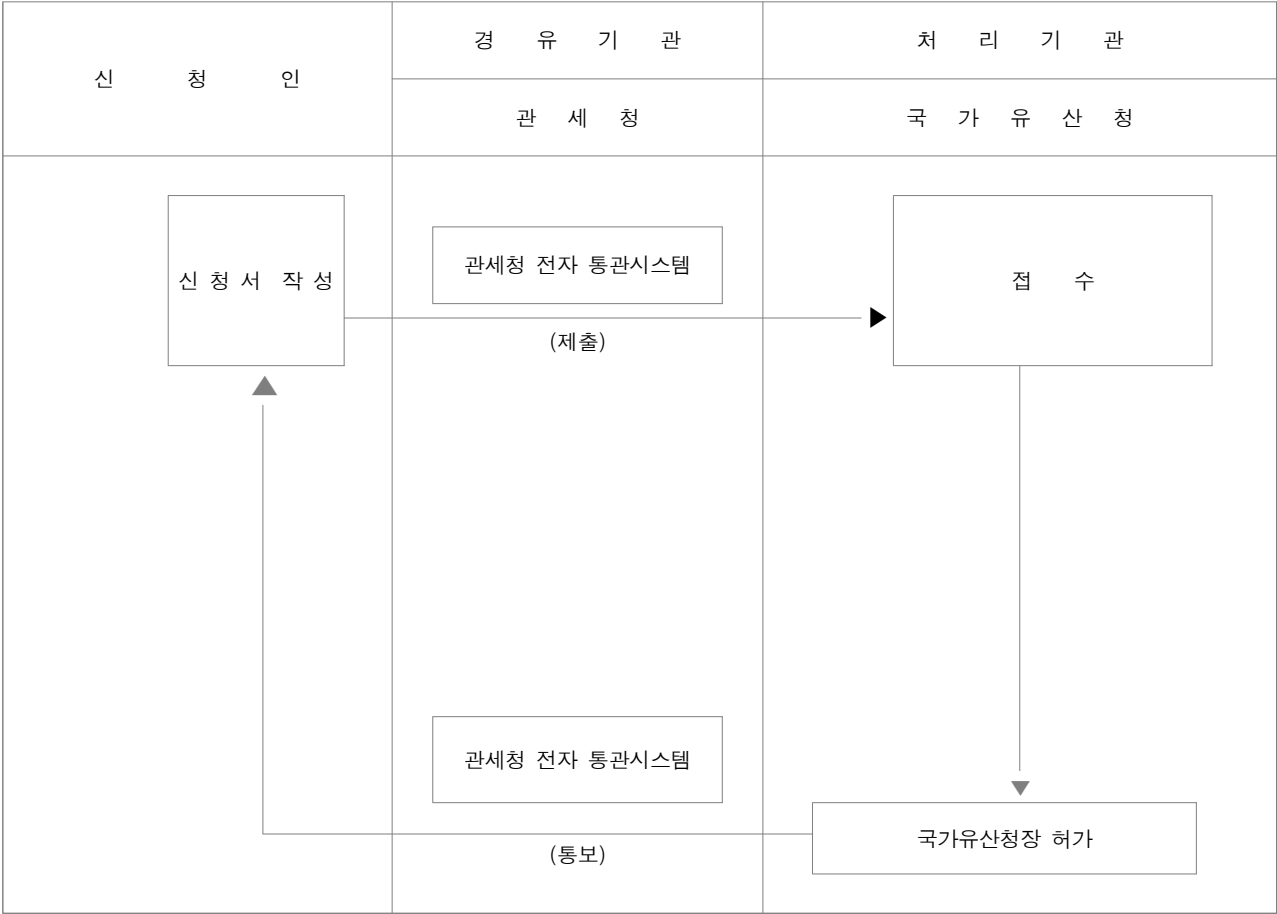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득 경위서 1부 2. 문화유산 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1부 4. 보험증서 사본 1부 5. 전시·조사·연구계획서(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허가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수량
	규격	반출방법 [] 구입 [] 기증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연월일
	내용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유 산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속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
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문화유산의 연혁 · 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
부 설명자료

4. ~ 12. (생략)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
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
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
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는 관세청장이 운영 ·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
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
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② (생략)

③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
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반
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

-----.

1. · 2. (현행과 같음)

3. -----
----- 근거기준(제8조에 따른
가치정의속성을 포함할 수 있
다)-----

4. ~ 12. (현행과 같음)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전시, 조사 · 연구계획서(기
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략)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유산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 효과

2. (생략)

3.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 여부

4. ~ 7. (생략)

⑥·⑦ 삭제

⑧ (생략)

제43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

1.·2. (현행과 같음)

3. 전시, 조사·연구계획서(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전시, 조사·연구 필요성 -----
----- 전시, 조사·연구 효과

2. (현행과 같음)

3. 전시, 조사·연구기간, 전시, 조사·연구장소 및 전시, 조사·연구환경의 적정성 여부

4. ~ 7.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①

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② (생략)

③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
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관세청장
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전시, 조사·연구계획서(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1. · 2. (현행과 같음)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
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④ (생략)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
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5.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
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6. (생략)

⑥·⑦ (생략)

⑧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구체
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해당 문화유산의 전시 필요
성 및 예상되는 전시 효과

2. (생략)

3.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
환경의 적정성 여부

3. 전시, 조사·연구계획서(기
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1개월 -----

-----.

1. ~ 4. (현행과 같음)

5. 전시, 조사·연구계획서(기
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6.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전시, 조사
· 연구 필요성 -----
----- 전시, 조사·연구
효과

2. (현행과 같음)

3. 전시, 조사·연구기간, 전시,
조사·연구장소 및 전시, 조사
· 연구환경의 적정성 여부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